

## 홍콩의 특허 보호 제도

### 특허란 ?

특허란 발명자에게 자신의 발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발명이 신규성, 창작성이 있고, 산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제외 유형에 속하지 않는 발명이라면 홍콩에서 특허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특허의 소유자는 특허권에 부여된 법적 권리를 행사하여 타인이 그의 특허발명을 제조, 사용, 판매 혹은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게 함으로써, 그의 특허발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특허 등록 보호의 지역적 범위

홍콩의 특허 등록제도는 지역적인 보호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어느 특허가 중국 지식재산권청 (Stat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또는 다른 국가 혹은 지역의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특허가 자동적으로 홍콩에서 보호되지는 않습니다. 즉, 홍콩에서 특허를 보호 받으려면 반드시 홍콩 “특허조례 (제 514 장)” 및 “특허(일반)규칙 (제 514C 장)”에 따라 홍콩에서 등록되어야 합니다.

### 왜 특허를 등록해야 하는가?

특허가 등록되면 권리자는 그 발명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영리활동이나 사업운영 중에 특허권자인 여러분의 동의를 받지 않고 홍콩에서 여러분의 특허를 사용하였다면, 이는 권리침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적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표준특허’와 ‘단기특허’

홍콩에는 ‘표준특허’와 ‘단기특허’라는 두 가지 종류의 특허가 있습니다.

표준특허의 최장 유효기간은 20 년이며, 등록 후 3 년이 지나면 매년 기간을 연장해야 하고, 단기특허의 최장 유효기간은 8 년이며, 등록 후 4 년이 지나면 1 번만 기간을 연장하면 됩니다.

## 특허의 출원

특허 출원을 위해서는 출원서를 완전하게 작성하고, 문서 송달을 위한 홍콩 내의 주소를 기재하여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 지식재산부(IPD: Intellectual Property Department)”의 특허등록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표준특허의 출원절차는 2 단계로 나누어지며, 각 단계의 출원 비용은 접수료가 380 홍콩달러, 공고료가 68 홍콩달러입니다. 단기특허의 출원 비용은 접수료가 755 홍콩달러, 공고료가 68 홍콩달러입니다.

특허 출원서 및 소요비용에 관한 자세한 자료는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 지적재산권부의 홈페이지 ([http://www.ipd.gov.hk/chi/forms\\_fees/patents.htm](http://www.ipd.gov.hk/chi/forms_fees/patents.htm))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 <표준특허 출원>

홍콩에서의 표준특허 등록은 아래의 세 특허청 (「지정 특허청」이라 함) 에서 행한 특허등록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지식재산권청
- 유럽 특허청 (영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경우)
- 영국 특허청

표준특허의 출원절차는 ‘출원(request for record)’ 및 ‘등록청구(request for registration and grant)’의 두 단계로 나누어지며, 출원인은 반드시 다음 기간 내에 관련 출원 및 청구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출원’은 「지정 특허청」이 공고한 해당 특허의 출원 (「지정 특허출원」이라 함)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홍콩 지식재산부 특허등록처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등록청구’는 「지정 특허청」이 해당 특허를 등록 (「지정 특허등록」이라 함) 한 날과 홍콩 지식재산부 특허등록처가 ‘출원’을 공고한 날 중 더 늦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 <단기특허 출원>

홍콩 단기특허의 등록은 ‘PCT(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조사기관’ 또는 「지정 특허청」 중 한 기관에서 작성한 조사(검색)보고서를 기초로 이루어 집니다.

홍콩에서 단기특허를 출원하려면 단기특허 등록 출원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관련 문서와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 지적재산부의 홈페이지 [http://www.ipd.gov.hk/chi/intellectual\\_property/patents/how\\_to\\_apply.htm](http://www.ipd.gov.hk/chi/intellectual_property/patents/how_to_apply.htm) 에서는 이와 관련 문서와 자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특허 등록처는 특허 등록 출원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특허 출원에 대한 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이 몇 단계로 나누어 집니다.

- 출원일 심사
- 방식(형식사항) 심사
- 특허출원 공개 또는 등록의 공고, 특허 등록증 송부 (표준특허의 ‘등록청구’ 및 단기특허의 ‘출원’시에만 해당)

### <표준특허 - ‘출원’>

제출된 출원서류에 흠결이 없고, 관련 요건에 부합하면 전체 절차 (특허 등록처에서 출원서를 접수하고 관련 특허의 출원공고까지) 에 필요한 시간은 최단 3 개월입니다.

### <표준특허 - ‘등록청구’>

관련 청구에 흠결이 없고, 등록 요건에 부합하면 전체 절차 (특허 등록처에서 등록과 등록청구서를 접수하고 특허 등록증을 발급하기까지) 에 필요한 시간은 최단 3 개월입니다.

### <단기특허 - ‘출원’>

제출된 출원서에 흠결이 없고, 관련 요건에 부합되면 전체 절차 (특허 등록처에서 단기특허 출원서를 접수하고 특허 등록증을 발급하기까지) 에 필요한 시간은 최단 3 개월입니다.

## 제 1 단계 - 출원일 심사

특허 등록처는 출원서를 접수한 후 바로 출원인에게 그 출원의 제출일자를 통지할 것입니다.

### <표준특허 - 출원일 설정>

출원인이 출원서에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 ‘지정 특허출원’ 및 ‘지정 특허의 출원 번호’, ‘공고번호’, ‘공고일’을 명확히 기재하였다면 특허등록처는 표준특허의 출원일을 설정할 것입니다.

### <표준특허 - 등록청구 제출일 설정>

출원인이 등록청구서 ‘청구인 신분’, ‘지정특허 명세서’ 및 ‘특허출원의 공고번호’, ‘지정특허 등록공고번호’ 및 ‘등록 공고일’을 명확히 기재하였다면 특허 등록처는 등록청구의 제출일을 설정할 것입니다.

### <단기특허 - 출원일>

출원인이 단기특허 출원서에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과 ‘발명의 명세서’를 기재하였다면 특허 등록처는 단기특허 출원일을 설정할 것입니다.

## 제 2 단계 - 방식(형식사항) 심사

특허 등록처는 출원인에게 출원일을 통지한 후, 출원에 대한 형식상의 심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방식 심사는 출원서에 규정된 자료 및 문서를 제대로 제출했는가 등에 대해 행하는 심사를 말합니다. 특허 등록처는 출원에 대해 실질적인 심사 (예를 들어 관련 특허의 신규성 및 진보성) 나 선등록된 특허권 여부는 조사하지 않습니다.

만약 출원이 형식상의 규정에 맞지 않는다면 특허 등록처는 2 개월 내에 불완전한 부분을 정정하도록 출원인에게 통지할 것입니다. 만약 출원인이 주어진 기간 내에 지적된 오류를 정정하지 않는다면, 출원은 철회한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 제 3 단계 - 공고와 등록

만약 출원이 형식상의 규정에 부합되면 특허 등록처는 당해 특허 출원을 공고 혹은 특허등록하고 이를 홍콩 지적재산권 공보

([http://www.ipd.gov.hk/chi/ip\\_journal.htm](http://www.ipd.gov.hk/chi/ip_journal.htm)) 에 게재할 것이며, 출원인에게는 특허등록증을 발송하게 됩니다 (표준특허의 ‘등록청구’와 단기특허의 ‘출원’에만 적용됨) .

일반적으로 출원인은 등록청구서 제출 후 3 개월 이내에 특허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특허의 ‘등록청구’ 및 단기특허의 ‘출원’에만 적용) . 특허 등록증을 발급 받은 후에 특허권자는 그 특허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어떤 전략을 통해 홍콩 및 중국 대륙에서 특허를 보호할 수 있는가? <권고사항>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여러분의 특허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특허발명의 소유자만이 특허권을 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타인에게 위탁 또는 고용계약을 통해서 발명을 하도록 하거나, 특허를 양도 받음으로써 특허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허는 새로운 발명 분야에서만 권리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해당 ‘지정 특허출원’ 및 ‘단기특허의 출원’을 할 때까지는 여러분의 발명을 반드시 비밀로 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출원서 제출 전에 여러분의 발명을 활용하여 제품을 만들거나 발명을 외부에 발표 또는 공개한다면 (예를 들어, 발명품을 카탈로그에 발표하거나 주문서를 보내 제작하는 등) 해당 발명이 특허등록을 받더라도 이 등록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허출원 당시에 여러분의 특허가 새로운 발명(신규성 있는 발명)이라고 간주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출원 전에 발명을 외부에 공개하더라도 발명의 신규성에 피해를 입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만 적용됩니다. 홍콩 “특허조례” 제 95 조 및 제 109 조에서는 신규성에 피해가 되지 않는 공개의 구체적인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 전에 발명의 자세한 상황을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면 먼저 전문가의 의견을 구해서 여러분의 발명이 공개됨으로 인해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 본토의 특허 등록과 보호 제도는 홍콩의 제도와 동일하지 않으므로, 양 지역에서 각각 특허를 등록받아야 합니다. 중국 본토에서 특허를 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홍콩에서 자동적으로 특허를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업적으로 발명을 활용하고, 어떠한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발명을 출원해서 등록받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홍콩에서 여러분의 특허를 침해하면, 여러분은 홍콩 “특허조례”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표, 저작권, 특허 또는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의 각종 권익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 변호사나 변리사의 전문적인 의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온라인 검색 서비스

홍콩 지식재산권부에서는 무료 인터넷 검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ipsearch.ipd.gov.hk>) . 이 서비스를 통해 등록된 특허, 이미 공고된 특허출원, 특허권리자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전자출원 서비스

홍콩 지식재산권부의 전자출원시스템을 사용하여 특허 출원서류 등을 제출하려면, 우선 지식재산권부의 전자 서비스 고객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전자 서비스 고객은 문서 송달에 필요한 홍콩 주소를 제출해야 하고, 홍콩 관련 인증기관으로부터 전자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전자출원 서비스 관련 자료는 지식재산권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iponline.ipd.gov.hk>) .

## 관련 사이트

출원서 및 수수료에 관한 상세 자료

([http://www.ipd.gov.hk/chi/forms\\_fees/patents.htm](http://www.ipd.gov.hk/chi/forms_fees/patents.htm))

관련 첨부문서와 자료에 대한 세부사항

([http://www.ipd.gov.hk/chi/intellectual\\_property/patents/how\\_to\\_apply.htm](http://www.ipd.gov.hk/chi/intellectual_property/patents/how_to_apply.htm))

홍콩 지식재산권 공보

([http://www.ipd.gov.hk/chi/ip\\_journal.htm](http://www.ipd.gov.hk/chi/ip_journal.htm))

인터넷 검색 서비스

(<http://ipsearch.ipd.gov.hk>)

전자 출원 서비스

(<https://iponline.ipd.gov.hk>)

## 상세 정보 문의처

만약 더 많은 자료 검색이나 도움이 필요할 때는, 홍콩 특허등록처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홍콩 Wan Chai(灣仔)  
Queen's Road East(皇后大道東) 213 호  
Wu Chung House(胡忠大廈) 24 층  
지적재산권부

전화문의: (852) 2961 6901  
E-mail 문의: [enquiry@ipd.gov.hk](mailto:enquiry@ipd.gov.hk)  
홈페이지문의: <http://www.ipd.gov.hk/>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 지적재산권서  
2006 년 8 월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 2006

## 중요 고시

본 문장은 홍콩의 특허 보호제도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에 불과한 것으로, 결코  
완벽한 내용이 아니며, 법적 의견이라고는 더더욱 볼 수 없습니다. 만약 특허  
보호와 관련한 법적 의견을 구하신다면, 지적재산권 변호사나 변리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판권소유

본문의 내용을 어떠한 형식으로 복제, 배포 혹은 전시하여 비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배포물 등에 다음 공고를 밝히기만 하면,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에 사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료 전재 《홍콩의 특허 보호》 ©2006,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의 동의하에 사용」